

요약

2026년 7월 EIOPA는 SolvencyII 지침에 따른 유동성 위험관리와 감독 권한의 적용 기준을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으며, 동 가이드라인은 2027년 1월 30일부터 적용될 예정임. 가이드라인은 지침에 규정된 해약환급금 지급 중단 권한의 행사 기준을 명시하고, 향후 일관된 규제 적용을 위해 지급 중단 조치의 영향 평가에서 얻은 교훈을 EIOPA와 공유하도록 함

- SolvencyII 지침에 유동성 위험관리 및 감독 권한을 규정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으며, 동 조항은 구체적인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유럽보험연금감독청(EIOPA)이 제정하도록 위임함¹⁾²⁾
 - SolvencyII 지침에 제144b조를 신설하여 보험회사에 유동성 위험이 발생한 경우 감독당국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
 -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에 위험관리를 위한 개선 요구를 할 수 있으며, 예외적인 상황에서 해약환급금 지급을 최대 3개월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부과할 수 있음
 - 이를 적용하는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EIOPA가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(ESRB)와의 협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도록 함
- 이에 따라 2026년 7월 EIOPA는 유동성 위험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(재)보험회사의 역할과 감독당국의 권한을 구체화했으며, 동 가이드라인은 2027년 1월 30일부터 적용될 예정임
 - 감독당국은 보험 및 재보험회사에 유동성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회사에 시정조치 계획을 담은 공식 서면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
 - 서면에는 시정조치 내용, 단기·중기·장기적 시행 일정과 유동성 위험관리체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이 포함되어야 함
 - 회사는 제출한 서면에 따라 유동성 위험을 관리해야 하며, 감독당국은 특히 중·장기적 관점에서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함
 - 회사가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감독당국은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, 유동성 위험관리 계획³⁾ 개선 등 구체적인 조치를 부과할 수 있으며, 조치는 최소 6개월마다 재검토되어야 함

1) Directive (EU) 2025/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November 2024 amending Directive 2009/138/EC as regards proportionality, quality of supervision, reporting, long-term guarantee measures, macro-prudential tools, sustainability risks and group and cross-border supervision, and amending Directives 2002/87/EC and 2013/34/EU

2) EIOPA(2026. 7. 15.), "Final report on the Guidelines on supervisory powers to remedy liquidity vulnerabilities", EIOPA-BoS-26/282

3) SolvencyII 지침 제144a조에 따라 보험 및 재보험회사가 감독당국에 제출하는 계획으로, 적정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현금 유출입 전망과 유동성 위험지표 등을 포함함

- 조치 부과를 위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유동성 적정성 입증 여부, 위험 허용 한도 초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
- 유동성 위험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 및 지배구조 체계 등을 개선하고 이를 보험회사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에 반영해야 하며, 위험관리에 관여하는 핵심 인력을 교육하여 전문성을 확보해야 함
- 유동성 위험 허용 한도, 유동성 위험지표 및 상급 보고 절차를 보다 명확히 명시하는 등 유동성 위험관리 계획을 개선해야 함
-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및 시나리오 분석을 개선하여 회사의 유동성 위험 노출 정도가 현실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고 유동성 완충자산을 새롭게 설정하거나 증액하여 유동성을 적정 수준으로 복원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

○ 또한 Solvency II 지침의 해약환급금 지급 중단 권한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이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명시함

- 감독당국은 시장·경제적 요인과 회사 고유의 요인을 고려하여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한 유동성 위험 발생 여부를 평가하고 식별해야 함
 - 시장·경제적 요인으로는 급격한 금리 변동과 같은 금융시장 여건의 악화, 계약 해지 증가 또는 대규모 보험금 청구를 야기하는 재난 발생 등이 포함됨
 - 회사 고유의 요인으로는 지급여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유동성 위험 발생 가능성이 있음에도 지급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산 규모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 있음
- 동 요인에 해당하는 중대한 유동성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생명보험의 해약환급금 지급을 최대 3개월까지 중단할 수 있음
 - 다른 조치로는 해결이 불가능하고 해약환급금 지급 중단이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이 가능함

○ 둘 이상의 회원국에서 영업하는 보험회사의 해약환급금 지급을 중단할 때는 모든 보험계약자를 동등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감독당국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사후평가에서 얻은 교훈을 EIOPA와 공유해야 함

- 둘 이상의 회원국에서 영업하는 보험회사의 해약환급금 지급을 중단하려는 경우 본국과 주재국의 감독당국은 각국의 상황을 미리 공유해야 함
 - 본국 감독당국은 해약환급금 지급 중단 적용 예정일 5영업일 전까지 주재국 감독당국에 회사의 지급여력 및 유동성 위험 평가 결과, 보험계약자 이익 보호에 부합되는 근거, 지급 중단 적용 예정일과 기간을 통지해야 함
 - 주재국 감독당국은 본국 감독당국이 유동성 위험 발생 상황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장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
- 지급 중단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각국 감독당국은 필요한 사항을 주고받으며 지속적으로 협력해야 하며, 본국 감독당국은 중단 사유가 사라졌다고 판단되면 주재국에 평가 내용을 알리고 중단을 해제해야 함
- 또한 EU 내 일관된 규제 적용을 위해 감독당국은 지급 중단 조치의 영향과 효율성을 평가하고 평가로부터 얻은 교훈을 EIOPA와 공유해야 함